

울산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0가합162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변론 종결2022. 8. 10.

판결 선고2022.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 7. 10. 접수 제23843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 2) 피고는 건축설계 및 종합감리전문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대표이사 C과 B의 대표이사 D은 형제지간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15. 6. 24.경 B과 사이에 B의 E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의 대표이사인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7. 1. 18. 당좌부도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 3) 이에 원고는 2017. 2. 14. B을 대위하여 E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724,550,915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B로부터 5,343,780원을 회수하였다.
- 4) 원고는 B과 D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차전5478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7. 7. 7. 'B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208,599원 및 이 중 719,207,13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B과 D이 이를 송달받고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의 선행소송

- 1) B은 2009. 12. 30. F 등 8명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2. 3.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09가단60155호). 이에 대하여 F 등이 창원지방법원 2011나218호로 항소하였고, 이후 상고심(대법원 2013다18011호) 및 파기환송심(창원지방법원 2013나8995호)을 거쳐, 2014. 4. 10.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대법원 2013다101067호)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다(F에 대한 청구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 각하된 이외에는 제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됨, 이하 위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60155호 및 그 항소심, 상고심 사건들을 통틀어 '관련 제1민사판결'이라 한다).

2) B은 2014. 10. 24. 위 관련 제1민사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G 등 10명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1)에 관하여 지분소유권말소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17. 일부 청구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 각하된 이외에는 'B에게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3. 12. 29. 접수 제49620호로 마친 2,644.63/5,341 지분이전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6252호), 위 판결은 2015. 10. 9.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2민사판결'이라 하고, 관련 제1민사판결과 통틀어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와 B의 금전거래관계 및 대물변제 약정

1) 피고와 B은 아래 표의 '작성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공증인 H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에서, 피고가 B에 아래 표의 '작성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아래 표의 '대여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여하는 내용의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각 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하고, 개별 공정증서는 작성일자로 특정한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는 아래 표의 '제10조'란 기재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2012. 9. 5.	이 사건 사무소 증서 2012년 제558호	5억 4천만 원	2013. 12. 31.	연 10%	B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관련 제1민사판결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 확정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사건의 목적물에 제1순위의 근저당설정(채권 최고금액은 위 사건 확정 당시의 제1조 차용원리금 잔액으로 함)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2	2012. 10. 19.	이 사건 사무소 증서 2012년 제636호	4억 6천만 원	2013. 6. 30.	연 8%	B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관련 제1민사판결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 확정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사건의 목적물에 제2순위의 근저당설정(채권 최고금액은 위 사건 확정 당시의 제1조 차용원리금 잔액으로 함)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3	2013. 1. 29.	이 사건 사무소 증서 2013년	3억 원	2013. 12. 31.	연 8%	B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관련 제1민사판결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 확정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사건의 목적물에 제3순위의 근저당설정(채권 최고금액은 위 사건 확정 당시의 제1조 차용원리금 잔액으로 하고, 채무자는 B로 함)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1	2012. 9. 5.	이 사건 사무소 증서 2012년 제558호	5억 4천만 원	2013. 12. 31.	연 10%	B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관련 제1민사판결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 확정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사건의 목적물에 제1순위의 근저당설정(채권 최고금액은 위 사건 확정 당시의 제1조 차용원리금 잔액으로 함)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제58호				
4	2013. 4. 16.	이 사건 사무소 증서 2013년 제184호	5억 원	2014. 6. 30.	연 8%	B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관련 제1민사판결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 확정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사건의 목적물에 제4순위의 근저당설정(채권 최고금액은 위 사건 확정 당시의 차용원리금 잔액으로 하고, 채무자는 B로 함)등기를 해주기로 하며, 이후 위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이 되면 분할등기와 동시에 이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해주기로 한다(매매금액은 소유권이전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피고와 B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매매일자는 분할등기가 완료된 날로 한다).
5	2013. 5. 27.	이 사건 사무소 증서 2013년 제273호	3억 원	2014. 6. 30.	연 8%	B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관련 제1민사판결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 확정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사건의 목적물에 제5순위의 근저당설정(채권 최고금액은 위 사건 확정 당시의 차용원리금 잔액으로 하고, 채무자는 B로 함)등기를 해주기로 하며, 이후 위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이 되면 분할등기와 동시에 이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해주기로 한다(매매금액은 소유권이전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피고와 B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매매일자는 분할등기가 완료된 날로 한다).
6	2013. 8. 5.	이 사건 사무소 증서 2013년 제403호	4억 원	2015. 6. 30.	연 8%	B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관련 제1민사판결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 확정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사건의 목적물에 제6순위의 근저당설정(채권 최고금액은 위 사건 확정 당시의 차용원리금 잔액으로 하고, 채무자는 B로 함)등기를 해주기로 하며, 이후 위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이 되면 분할등기와 동시에 B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해주기로 한다(매매금액은 소유권이전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피고와 B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매매일자는 분할등기가 완료된 날로 한다).
7	2014. 1. 14.	이 사건 사무소 증서 2014년 제8호	5억 원	2015. 12. 31.	연 8%	B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관련 제1민사판결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 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고, 그 신청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사건의 목적물에 제7순위의 근저당설정(채권 최고금액은 위 사건 확정 당시의 차용원리금 잔액으로 하고, 채무자는 B로 함)등기해주기로 하며, 이후 위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이 되면 분할등기와 동시에 B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해주기로 한다(매매금액은 소유권이전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피고와 B 간에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매매일자는 분할등기가 완료된 날로 한다).
8	2014. 8. 8.	이 사건 사무소 증서 2014년 제309호	3억 원	2015. 12. 31.	연 8%	B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관련 제1민사판결이 2014. 4. 14. 승소확정되었으므로 B은 즉시 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고, 그 신청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사건의 목적물에 제8순위의 근저당설정(채권 최고금액은 위 사건 확정 당시의 차용원리금 잔액으로 하고, 채무자는 B로 함)등기해주기로 하며, 이 후 위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이 되면 분할등기와 동시에 B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해주기로 한다(매매금액은 소유권이전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피고와 B 간에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매매일자는 분할등기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피고와 B은, 피고가 B에 아래 표의 '작성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아래 표의 '대여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여하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각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라 하고, 개별 차용증은 작성일자로 특정한다).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아래 표의 '대물변제 약정'란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각 일자에 체결된 대물변제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이라 하고, 개별 대물변제 약정은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일자로 특정한다).

1	2015. 1. 19.	1억 원	울산광역시에서 공탁한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공사금의 배당기일	연 3.5%	변제방법: 관련 제2민사판결 선고가 2015. 9. 17.에 있었고, 같은 해 10. 3.부터 10. 9.에 걸쳐 G 등 10명 모두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으므로, 위 변제기일 전에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 말소된 지분소유권의 회복등기가 완료(2016.3.31.로 예상)되면, 공유물분할 전이라도 피고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B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전 채무(지분소유권 이전등기일 현재의 차용원리금 잔액)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매매금액은 위 지분소유권 이전등기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하며, 매매일자는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의 회복등기가 완료된 날이 됩니다.이 중 2015. 12. 30.자 차용증에는 아래와 같은 주석이 추가되어 있음. • 주석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B의 회복등기 신청 사건은 같은 해 12. 18. 거제등기소에 접수되었습니다. • 주석3. (중략) 본등기는 늦어도 2016. 1. 8.까지는 경료될 것으로 예상(추정)합니다.
2	2015. 6. 24.	5,000만 원	2015. 12. 31.		
3	2015. 10. 19.	3억 원	2015. 6. 30.		
4	2015. 11. 5.	8,000만 원	2016. 6. 30.		
5	2015. 11. 23.	8,000만 원	2016. 6. 30.		
6	2015. 12. 30.	9,000만 원	2016. 6. 30.		

마.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전부이전등기

1) 이 사건 각 부동산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3. 12. 29. 접수 제49620호로 마쳐져 있다가 2008. 4. 24. 말소된 공유자 B의 2,644.63/5,341 지분이전등기에 대한 회복등기가 2019. 6. 11. 관련 민사판결 등을 원인으로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의 회복등기'라

한다).

2)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5.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 7. 10. 접수 제23843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40억 원 이상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을 수 없고, 설령 위 부동산의 처분이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물반환의 방법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는 각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가) 피고와 B은 원고가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전인 2012. 9.경부터 금전거래를 해왔고, 2015. 12. 30.자 차용증을 작성할 무렵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40억 원에 달하였다. B은 2013. 4. 16.자 공정증서 작성시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어도 그와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2013. 4. 16.자 공정증서 상의 대물변제 약정의 이행인데,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2013. 4. 16.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는 B의 무자력 여부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선의의 수익자이고, 단순히 피고의 대표이사과 B의 대표이사가 형제관계에 있다는

점만으로 악의라고 볼 수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과 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이때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2234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B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전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내용이 포함된 2013. 8. 5.자 공정증서 상의 약정과 이를 승계한 그 이후의 공정증서 상의 약정 및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은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일련의 약정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일한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각 공정증서 상의 약정과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이행에 따라 이루어진 최종적인 법률행위이므로,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적어도 2013. 8. 5.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및 각 차용증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모두 피고와 B로 동일하고,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목적물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동일하다.

②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관련 민사판결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와 B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관련 민사판결의 '승소가 확정되는 경우'에 '확정판결 당시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 잔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채무자를 B'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대략적인 기준을 마련해두었다. 또한 2013. 4. 16.자 공정증서부터는 관련 민사판결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물이 분할될 경우,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매금액은 소유권이전당시의 시세', '매매일자는 공유물분할등기가 완료된 날'로 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대략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마련해두었다.

③ 2013. 8. 5.자 공정증서는 종전의 공정증서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 "분할등기시 B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전(全)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의 소유권이전"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 그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도 이를 중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④ 2015. 10. 9. 관련 민사판결의 승소가 확정되자 피고와 B은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완료되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 B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다. 2019. 6. 11.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조건이 성취되자,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2019. 7. 1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위 2013. 8. 5.자 및 그 이후의 공정증서 상 약정 및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내용에 부합한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위 사해행위 판단 기준일인 2013. 8. 5.을 훨씬 경과한 2017. 2. 14.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선의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가정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및 차용증 상에 기재된 대여금 상당액의 금원을 B에게 송금한 사실, ② 위 각 송금 내역이 각 지출결의서 상의 지급 내역과 일치하는 사실, ③ 위 기간 동안 작성된 피고의 대차전표에도 위 송금된 돈이 피고의 B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에 대하여 40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강경숙

판사항지현

판사김은솔

별지

1) 단,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5항 각 부동산의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된 지분 내역은 별지 목록 해당 기재와 같은 9102056.1829/28526281(제2항), 7030153.5571/28526281(제5항)이 아니라, 각 2644.63/5341 지분이다.

2) 단,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5항 각 부동산의 경우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지분 내역은 별지 목록 해당 기재와 같은 9102056.1829/28526281(제2항), 7030153.5571/28526281(제5항)이 아니라, 각 2644.63/5341 지분이다.